법치와 식민지 근대

담당교수 : 배민재

근대국가와 법

- 근대국가 → 법치국가
 - 근대사회의 경제·법 공동체
- - 법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기구(機構) 존재
-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며, 그들의 이해(利害)를 조정하는 힘을 소유(법에 의해 보장)
- 근대국가의 힘
 - 국가이성의 관념 : '국가의 통일', '집중적 권한의 수립', '국민대표의 원리'
 - '자유'의 관념 : '인권의 확립'과 '권력분립의 원리'
 - → 양자는 사실 모순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의 여지가 존재
 - → 모순적 요소를 일관하는 것으로써 '법의 우월성'이 강조

'법치'의 경험

- 조선왕조의 법질서
 - 유교적 법치주의
 - 신분과 지위에 따른 차등 적용
- 근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'법의 지배'
 - 보편적 법치
 - → 근대적 개인으로서 법의 지배 경험
- 근대화('문명화')와 폭력
 - '야만적인' 폭력의 배제
 - 폭력을 통제하는 동시에 독점
 - '준법'의 내면화

사법제도의 근대화(갑오개혁)

- 재판과 형벌제도의 근대화 (1894년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)
 - 법무아문 설치
 - 재판제도 도입 : 「재판소구성법」(법률 제1호)
 - 연좌제 폐지
 - 민사와 형사의 구분 : 「민형소송규정」(법부령 제3호)
 - 징역형 도입
- 대한제국 정부의 「형법대전」(1905)

갑오개혁 이후의 사법 현실

- - 재판 제도의 현실
- > 전국적으로 일원적 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
- >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과거와 다름없이 '군수재판', '관찰 사재판'이 존속(이른바 '원님재판')
 - 고문과 태형(태형과 장형을 통합한 새로운 태형)
- → 집행 방식 자체는 큰 변화 x
- → 태형 집행 시 신분적 차별 폐지
- - 징역형의 도입
- > 감옥 설비, 노역 작업장 시설 갖추어지지 x

개항기의 감옥

"도둑들의 처지는 가장 비참하였다. 대략 30여 명이 있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발에 차꼬를 차고 있으니 모두 병에 걸린 상태였다. 옴이 온몸에 올라 상처 부 위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. 그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, 뼈와 가죽 만 남아 있었으며, 죄수들은 밤낮으로 이유 없이 작은 구실을 대서라도 심 하게 두들겨 패기를 즐기는, 사람이라기보다 맹수에 가까운 이 존재들에 완전 히 예속되어 있었다 도둑 죄수 한 명이 죽으면 그가 병사하였다고 보고하 고, 죽은 죄수를 시체실에 치워둔다. 그러면 다음 날 밤에 쓰레기 담당자들이 시 체를 들어다가 성곽 밖에 있는 숲 속에 내다 버린다. "

- 펠릭스 클레르 리델, 『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』, 살림, 2009, 229-230쪽

갑오개혁 이후의 감옥

"1897년의 서울에서 가장 놀랄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감옥제도의 개선이다 …… 고문은 이 거대한 도시의 감옥으로부터 사라졌다. 그 러나 여전히 정치범들은 다른 곳에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1897년 1월, 매우 최근에 퍼져있었다 …… 서울에 있었던 이전의 감 옥들에 비해 현재의 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르 다는 생생한 인상을 받았다. 감옥 개혁의 방식으로 많은 것이 달라 졌으나, 반면에 많은 것들이 예전대로 행해지고 있는데, 특히 죄수 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그러하다."

- 이사벨라 버드 비숍, 『한국과 그 이웃나라들』, 살림, 1994, 505-506쪽

사법제도 개혁의 영향

"참혹하게 잘려진 머리와 머리가 잘린 몸체가 야만적으로 민중들에게 보여진다든지, 너무 심하게 고문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가는 광경은 일본의 지배 기간 동안(일본의 내정간섭 시기를 가리킨다 - 필자)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. 2년 전에 나는 사람의 잘린 머리가 사람들이 많은 서울 거리의 부지에 널려있는 것을 보았다. 그리고 머리가 없는 몸통들이 동대문 밖 거리에 피가 배어있는 채로 널려져 있음을 보았다. 그러나, 서울의 감옥에서 오후를 보내고 나서,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."

- 이사벨라 버드 비숍, 『한국과 그 이웃나라들』, 살림, 1994, 507쪽

지방관이 주재하는 법정, '군수재판'

- "피고 측은 항상 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는다. 많은 경우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매우 무시무시한 고문이 자행된다 가장 흔한 방법은 아주 무자비하게 매질하는 것이다. 피고는 재판을 받을 때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처신해야 한다. 나는 '법정'이라고 말했지만, 여기서는 설명이 필요하다. 문자 그대로 법정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은 없다. 고을 사또는 통상 두 평 남짓한 작은 집무실 바닥에 좌정한 채열린 창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며, 피고인과 기타 관계자들은 뜰에 선다."
- "사람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오는, 차마 경찰이라고 부르기 힘든 포졸들은 매우 거칠 어 피의자를 매질하거나 무자비하게 불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이들은 피 의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친척을 대신 연행해간다. 이러한 관행을 혁파했다는 현 정부의 주장을 나는 믿고 싶지만, 그들의 주장처럼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하지 못하고 있다. 나는 가해자 대신에 친척이 투옥된 사례를 적어도 한 건 이상 알고 있다."
- 제이콥 로버트 무스, 『1900, 조선에 살다』, 푸른역사, 2008, 247-249쪽

지방관이 주재하는 법정, '군수재판'

- "아침부터 와서 마시기 시작했으니 틀림없이 직무에 폐를 끼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, 하셔야 될 일은 사양 말고 하시라고 말했다. (군수가 말하기를-인용 자) 사실 오늘 대여섯 건의 재판이 있다. 민사에 관련된 것이라 그다지 서두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.....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부터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다. 장소라도 바꾸는 걸까 싶었는데 그대로이다. 한 잔 마시면서 한다. 물론 창문 밖의 마루 쪽에 서기장이라고 할 만한 군 관리가 대기하고 있는데,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. 한 단 낮은 넓은 흙바닥에 한 명 한 명 불려나 온다...... 하급 아전이 커다란 소리로 호출하면 피고나 원고가 머리를 조아리 고 몸을 굽히며 나온다. 품속에 소장을 지니고 있다. 관기가 곁에서 시중 을 들고, 손님과 함께 술잔을 들면서, 감옥을 처분하는 것은 아마도 세계적으 로 없는 일일 것이다."
 - 江見水蔭, 『捕鯨船』, 博文館, 1907, 192-193쪽

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와 법 계몽

- 1907년 7월 「민형소송규칙」
- 1907년 12월 「재판소구성법」
 - → 행정과 사법의 분리
 - → 일본인 판검사들을 한국 법원의 판검사로 임용
 - →區재판소 제도 창설
 - → 삼심제 채택
- 「형법대전」 개정
 - →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처벌조항 전면 삭제
- 식민지 조선은 일본 헌법의 외부에 배치, 일본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

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와 법 계몽

- ◆ 통감부 시기에 공포된 법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, 1910년 12월에 「범죄즉결례」(제령 제10호)와 「민사쟁송조정에 관한 건」(제령 제11호), 1912년 3월 「조선총독부 재판소령중개정」(제령 제5호), 「조선민사령」(제령 제7호), 「조선형사령」(제령 제11호), 「조선태형령」(제령 제13호), 「경찰범처벌규칙」(조선총독부령 제40호) 공포
- ◆「조선형사령」은 인권과 관련이 있는 강제수사와 소송절차에서 독소적 측면 ex) 검찰 및 경찰의 강체처분권 : '수사의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한 때'라는 추상적 기준, 통제장치 없음
- → 조선 민중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,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자유재량에 의한 처분이 더 적합하다는 것, 조선에 대해서는 법치가 아니라 관청 특히 경찰의 처분이 더 효과적이며, 조선인은 법령보다 관청의 명령에 더 순종적이라는 것을 강조
- ◆3·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는 「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」(제령 7호)을 공포
- ◆1925년 4월에는 일본에서 공포된 「치안유지법」(법률 제45호)이 조선에서도 시행

경찰국가

- " 종래 경험에 의하면 직무집행상 경찰법규의 결여로 인해 단속 상 불편을 느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. 한국 사회의 수준은 아직 유치하여 민중 가운데 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. 이들을 모두 成文의 典章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오히려 職 權에 기초한 자유재량의 처분을 하는 것이 國情에 적합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. 요컨대 오늘날은 법치국시대가 아니라 경찰국 시대이다. 즉 법규의 시대가 아니라 처분의 시대이며, 특히 한국 인은 법령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관청의 명령을 존중 준수하는 관념이 두텁다." -國內部警察局, 『韓國警察一斑』, 1910, 403 쪽
- "경찰은 마을 중심에 있었다. 가벼운 죄를 진 자는 태를 쳐서 방

「치안유지법」(1925)

- 현 제동 함에 있서 권력자가 自行自止로 법령을 제정하야 인민을 억압하는 것을 誰가 감히 容喙하며 터구나 無權無力한 우리 조선인이야 멋지 ㅡ 들의 항쟁과 비난을 할 수 있스랴. 현재에도 구한국시대의 대표적 악법이라 할마한 소위 보안법이 절대의 효력이 있고 또 근末 민족운동時에 특별시행하 제령 7호의 苛法이 있서 인민을 억압하는 외에 잠중으로 此 치양유지법이 실시되게 되면 우리 조선인은 手足動靜까지도 一毫의 자유가 업시되야 결국 사람의 형제를 具한 者 치고는 법망에 罹지 안을 者가 업을 것이다.
 - - 「二重三重의 惡法令」, 『개벽』 58, 1925, 10쪽
- - 경찰이 바로 즉결처분을 하는 식민지형 경찰사법을 대폭 인정함으로써 소송경제의 효율성을 도모
- -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식민지 경찰이 조선인의 일상에 포괄적으로 개입
- - 식민지 체제의 근대적 규율화를 실행하는 공권력으로서 (법이 아니라)경 찰이 최일선에 있었음

식민지기의 재판과 감옥

"(1930년대 초) 서울구치소에서 나는 한동네 편싸움으로 살인사 건이 나서 38명이 무더기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. 사건이 발 생하기는 5년 전이라는데 1심에서 최고 사형, 최하 징역 5년의 유 죄판결을 받고 복심법원에 올라온 것이다. (변호사가 이들을 면회했으나) 경찰에서 단단히 기를 죽여 놓은 것이 분명하다. 당 신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며 말을 시켜보니 왜 5년 동 안이나 옥중에 辛苦를 했는지, 자세한 범죄사실 조차 모르는 이가 태반이다."

- 이인, 『반세기의 증언』, 97쪽